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조영삼 소유물건(2024타경 42673)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신범식
감정평가서 번호	대한 제241025-17-0005호



2024.12.1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봉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8층  
TEL : (053)761-7890 FAX : (053)761-7888



(주)대한감정평가법인  
KOREA APPRAISAL CO., LTD.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1.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소재 “외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경매2계)”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2. 대상물건의 개요

대상물건 전경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조건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533-2	임야	358	자연녹지	토지임야	맹지	부정형 완경사	12,700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533-10	임야	158	자연녹지	토지임야	맹지	부정형 급경사	12,700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2월 04일입니다.

####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 평가대상 물건에 대하여 2024년 12월 03일, 04일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본건 기호 (1,2)는 공유의 토지로서 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한 평균 단가로 평가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 비율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 기호 (1,2)는 지적 경계의 확인이 어려운 경사지대에 위치한 비교적 소규모의 토지로서, 지적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파악 하였으나, 본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의 위성지도상 서로 다른 위치로 표시 되는 등, 정확한 위치 및 지적 경계는 측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기호 (2)토지는 2011.08.17.일자로 보상 평가가 진행 되었으나, 보상금 수령 여부는 미상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 1. 감정평가의 근거

####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p>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li> <li>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li> <li>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li> <li>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li> </ul>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p>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li> <li>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li> <li>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li> </ol>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li> <li>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li> <li>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li> </ul>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	---

## 2. 대상물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토지는 시장자료가 풍부하여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또 다른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토지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m <sup>2</sup> )
				토지	건물			
a	현풍읍 오산리 000-0	자연녹지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	1,088	-	2022.03.02	29,600,000 (토지만)	약 27,000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 나.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면적 (m <sup>2</sup>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m <sup>2</sup> )
㉠	구지면 도동리 0	자연녹지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	전	2,030중 312.31	경매	2024.08.09	46,000
㉡	구지면 오실리 00	자연녹지 (도시자연 공원구역)	답	전	565	경매	2022.03.17	27,000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전산센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고
자연녹지지역	농경지	맹지	36,000원/㎡ ~ 45,000원/㎡ 수준	위치, 면적, 형상, 경사 및 도로조건 등에 따라 가격 격차 있을수 있습니다.

## 2.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가.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가장 비슷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	공시지가(원/㎡)	대상토지
A	현풍읍 오산리 471	1,283	임야	토지임야	자연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	맹지	부정형완경사	6,670	1, 2

[공시기준일 : 2024.01.01]

### 나.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	비교표준지	지역 및 용도지역(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 2	A	대구광역시 달성군(녹지지역) (2024.01.01~2024.12.04)	0.724% (1.00724)	$(1+0.00625) \times (1+0.00090 \times 34/31)$ ≈ 1.0072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 라.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경지대(전)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대상 토지	비 교 표준지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0	1.00	1.00	1.35	1.00	1.35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행정적조건(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우세합니다.					
2	A	1.07	1.00	0.94	1.35	1.00	1.358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 행정적조건(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우세합니다.					

[비교치 : 대상토지/비교표준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2003다38207판결(2004.05.14 선고), 2002두5054판결(2003.07.25.선고)]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였습니다.

### 2)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식

$\frac{\text{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사례 토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text{시점수정된 표준지 단가(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 가)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중 아래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사례 구분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면적 (㎡)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적용
㉠	평가 사례	구지면 도동리 0	자연녹지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	전	2,030중 312.31	2024.08.09	46,000	표준지 A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격차율 산정

구분	사례단가(원/㎡) 공시지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 율	비고				
									평가사례 ㉠	46,000	1.00	1.00265
표준지 A	6,670	-	1.00724	-	-	6,718						
산출 내역	사정보정	- 해당사항없음.										
	시점수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지역)			(2024.08.09~2024.12.04)							
	지역요인	- 비교사례는 비교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0.88	1.00	0.78	0.97	1.00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및 취락과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경사 등), 행정적조건(지목)에서 열세합니다.												

##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위에서 산정한 격차율 및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대상부동산의 감정 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비교 표준지	비교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	4.5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6,670	1.00648	1.00	1.350	4.57	41,417	41,000
2	A	6,670	1.00648	1.00	1.358	4.57	41,663	41,000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41,000	179	7,339,000	조영삼 지분
2	41,000	79	3,239,000	조영삼 지분
합 계		258	10,578,000	

##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가. 비교사례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거래사례 중 아래와 같이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 사례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면적 (㎡)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대상 토지
a	현풍읍 오산리 000-0	자연녹지 (도시자연 공원구역)	전	전	1,088	2022.03.02	27,000	1, 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 다.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상 토지	비교 사례	지역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1, 2	a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지역) (2022.03.02~2024.12.04)	2.913% (1.02913)	$(1+0.00174 \times 30/31) \times (1+0.00181)$ $\times (1+0.00102) \times (1+0.00136) \times (1+0.00066)$ $\times (1+0.00132) \times (1+0.00061) \times (1+0.00093)$ $\times (1+0.00004) \times (1-0.00016) \times (1+0.01230)$ $\times (1+0.00625) \times (1+0.00090 \times 34/31)$ $\approx 1.02913$

## 라.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가치형성요인을 지니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개별요인 비교

비교사례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항목(세항목)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농경지대(전)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대상 토지	비교 사례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a	1.12	1.00	1.00	1.32	1.00	1.478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 행정적조건(지목에서 열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우세) 우세합니다.					
2	a	1.20	1.00	0.94	1.32	1.00	1.489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 행정적조건(지목에서 열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우세) 우세합니다.					

[비교치 : 대상토지/비교사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대상 토지	비교 사례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27,000	1.00	1.02913	1.00	1.478	41,068	41,000
2	a	27,000	1.00	1.02913	1.00	1.489	41,374	41,000

##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대상토지	토지단가(원/㎡)	면적(㎡)	시산가액	비고
1	41,000	179	7,339,000	조영삼 지분
2	41,000	79	3,239,000	조영삼 지분
합 계		258	10,578,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 1.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할 때 합리성이 대체로 인정되며,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토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원)
1	7,339,000	7,339,000	7,339,000
2	3,239,000	3,239,000	3,239,000
합 계	10,578,000	10,578,000	10,578,000

### 2.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 지	10,578,000	상세내역은 후첨 “감정평가명세서” 참조
총 액	10,578,000	

#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및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533-2	임야	자연녹지지역	358x- 2	179	41,000	7,339,000	조영삼 지분
2	"	533-10	임야	자연녹지지역	158x- 2	79	41,000	3,239,000	조영삼 지분
합 계								₩10,578,000.-	
				이	하	여	백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소재 “외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북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입니다.

기호 (2): 북서측 하향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입니다.

###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2): 북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나, 고저 등으로 인해 실제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공히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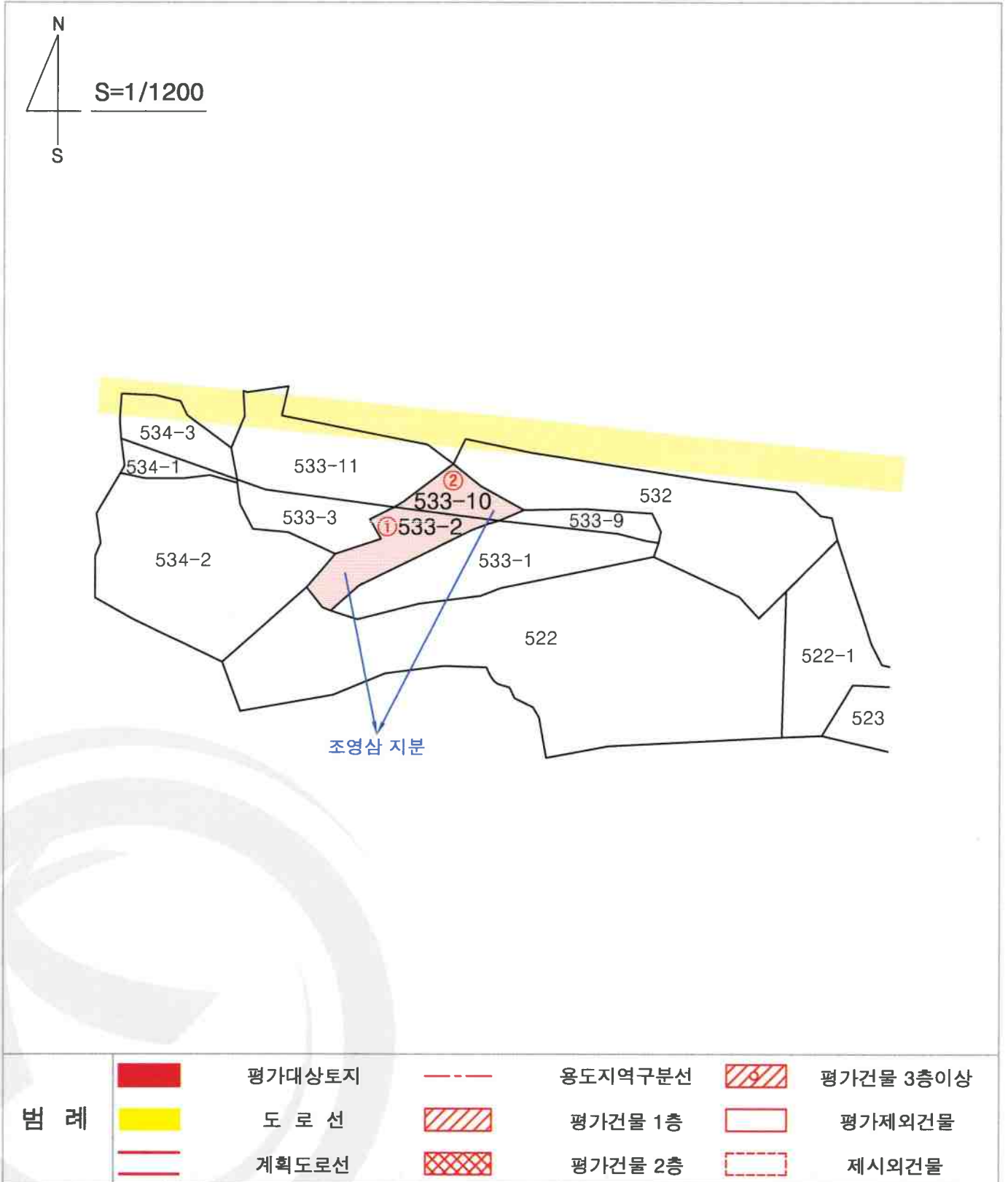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오산리 533-2번지 외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금액(원/㎡)
표준지공시지가	오산리 471	1,283	임	토지임야	자연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	6,670

# 지적 및 건물개황도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 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 사진 용지



본 건



본 건